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96

발의연월일: 2021. 2. 3.

발 의 자:권인숙·강득구·김철민

박찬대 · 서동용 · 송옥주

심상정・유정주・윤미향

이탄희 · 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제17조의4는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이 분절화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성이 미미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 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주요내용

- 가.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 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안 제17조의2).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 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 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 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함(안 제17조의2제5항 및 제6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남녀평등교육의"를 "양성평등의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남녀평등을"을 "양성평등을"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 3.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 ④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 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u>남녀평등교육</u> 의 증진)	제17조의2(<u>양성평등의식</u> 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
<u> </u>	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
실시하여야 한다.	(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
	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
	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u>방안</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 ④ 학교교육에서 <u>남녀평등을</u>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 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u>남</u> 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 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

/사	제>
<~	<i>^</i> ∏ <i>/</i>

}
=
1
բ
٠ ۲

④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

<u>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u>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년의 성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